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11일

주안4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혁	김 *혁 1997-02-23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07번길 (주안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6-04